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97호
2. 발 의 자 : 김용연 의원
3. 발의일자 : 2020. 12. 23.
4. 회부일자 : 2021. 1. 21.

II . 제안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석면해체·제거’로 사용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띄어쓰기를 수정함(안 제7조)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의2 신설).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12월 23일 김용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097호로 발의되어 2021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 등이 고시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에서는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전 설계 및 집행단계에서 일정조건 이상의 사업장¹⁾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감리인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30조²⁾).

1)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2)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함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및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에서도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시행전에 감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감리인 지정의 입법취지 및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미 상위법률에서 의무화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명시하는 것은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규정은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시 관련자들로 하여금 상위법의 규정사항을 인지시키고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을 독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024.,2021.2.9.)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참고] 석면제거 공사방법 및 절차

구분	발주자 또는 학교	해체·제거업자 등	감리인	석면모니터단
계획 단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대상학교선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작업범위 및 집행시기 결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예산편성 및 배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석면해체제거 책임관리인 지정</div>			
설계 및 집행 단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과업지시서 작성 (해체·제거,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 폐기물처리, 감리)</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margin-bottom: 2px; text-align: center;">감리인 선정 (법정규모이하도 선정 권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해체·제거업자 선정 (부적격업자 배제, 최소 45일전 선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석면(비산)농도측정기관 선정 (분리발주, 이해관계자 배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폐기물처리업자 선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석면모니터단 구성 (구성방안 부록1 참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20px;">석면 지도 적정성 검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20px;">석면모니터단 자체 교육</div>
해체·제거 단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석면 해체·제거 설명회 개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작업계획 검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감리인 지정 신고 발주자 → 지방자치단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석면비산측정 확인 측정완료 후 홈페이지 게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석면농도측정 확인 측정완료 후 홈페이지 게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잔재물 조사 합격시) 준공검사 및 승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잔재물 조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발주자 → 지방자치단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작업계획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집기류 이동, 사전청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비닐보양 및 밀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석면작업 신고 및 필증교부 (지방노동권서, 7일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설비 해체·제거(필요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석면 해체·제거 실시 주변 비산정도측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및 지정폐기물 처리 (지방자치단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잔재물 확인 및 청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작업장 석면농도측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보양 제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청소 후 (석면모니터단과 협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잔재물 조사 합격시) 작업완료 및 결과보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감리계획서 제출 (작업계획서 검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20px;">감리일지 작성 및 상주감리(감리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20px;">감리인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20px;">잔재물조사 (석면모니터단 합동)</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20px;">잔재물 조사 보고서 제출 감리인 → 발주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20px;">감리완료보고서 제출 감리인 → 발주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설명회 참여 및 지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집기류반출, 청소상태 등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비닐보양, 밀폐여부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20px;">석면농도측정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20px;">잔재물 조사 등 (조사방법 부록3 참조)</div>

관계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시행 2020. 12. 28.]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2020. 12. 28., 일부개정]

[시행 2020. 12.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8호, 2020. 12. 28., 일부개정]

[시행 2020.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48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3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③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④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⑤ 제1항제2호 또는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⑥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감리인은 제4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